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633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고, 「공무원제안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제도를 하나로 통합·관리하고,
-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대상 및 운영절차를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의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규정」,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함

나. 제안의 범위·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함
-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였던 제안의 종류를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다.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제안의 실질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함
- 공모제안은 그 담당부서에서 심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을 심사하도록 규정함

라. 제안의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조·제16조·제25조 및 제28조).

-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창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관리하도록 함
-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마.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 실무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예산의 현저한 절감효과가 있거나 시 세입증대, 행정개선의 획기적 효과가 있는 창안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수립·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 시장은 「특허법」에 따른 직무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 보호법」에 따른 직무 고안 또는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39,280천원

○ 부상금

- 시민제안 포상(일반보상금) : 1,500,000원 × 4회 = 6,000천원
- 공무원제안 포상(포상금) : 1,500,000원 × 2회 = 3,000천원

○ 상여금 : 30,000,000원 × 1회 = 30,000천원

○ 전문위원 및 의견조회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 70,000원 × 2회 × 2명 = 280천원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7. 11. 8. ~ 2007.11.19.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 안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 이란 시민 또는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업체의 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것
  - 바. 그 밖에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2. “아이디어제안” 이란 제안자가 시행된 적이 없는 시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 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 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창안” 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우수제안” 이란 시장이 창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는 이를 접수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접수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흡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제안의 채택여부
2. 창안의 등급 결정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창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전문위원 및 실시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제1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제안을 시행한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 ① 시장은 제안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안의 심사·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안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3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의 심사기준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7조(창안의 등급)** ① 창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이하 “창안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모범공무원 규정」등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안산시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상 이상으로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창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창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이를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창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20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창안자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창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위원회 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상여금 지급)** ① 창안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시 세입의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창안으로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산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 규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시장은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제7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5조(관리기간)**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창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8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이 성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혁신담당 최 경 호
	담당자 성명·전화	노영임 (행정 2156)

[별표 1]

###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9조 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	실적가점	비 고
금 상	특별승급	0.8점 이내	
은 상		0.6점 이내	
동 상	희망부서 전보 기회 부여	0.4점 이내	
장려상		0.2점 이내	

[별표 2]

###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시상등급	시 상 내 역	
	부 상 금	지 급 기 준
금 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85점 이상
동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0점 이상
장려상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0점 이상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

##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제21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 × 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 - 1,000만원) × 20/100 + 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 - 1억원) × 10/100 + 2,100만원
시 세입 증대		세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li> <li>·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li> <li>· 미 : 500만원 미만</li> </ul>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633
----------	------

제안년월일 : 2007. 12. 11.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실적가감에 있어 공동제안자의 경우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제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신설함.

## 2. 주 요 골자

- “사람”을 “자”로 수정함(안 제9조)
- “사람으로”를 “자로” 수정함(안 제11조)
-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를 “공동제안자로 부여하되 그 인원은 5명 이하로 한다.”로 수정함(안 제19조)
- 안 제25조의 제목 “(관리기간)”을 “(관리 등)”으로 하고, 안 제25제1항에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확보를 위하여 상표 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5조)

#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사람”을 “자”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사람으로”를 “자로” 한다.**

**제19조 중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를 “공동제안자로 부여하되 그 인원은 5명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관리기간)”을 “(관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동조 제2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b>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생략)</b> 1.~4. (생략)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생략)	<b>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원안과 같음)</b> 1.~4. (원안과 같음) 5..... <u>자</u> ..... 6. (원안과 같음)
<b>제11조 (전문위원)</b> ① 시장은 제안이 전문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안의 심사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으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b>제11조 (전문위원)</b> ① ..... ..... ..... ..... <u>자로</u> .....
<b>제19조(인사상 특전)</b>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창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인사상 특전 및 실적가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 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b>제19조(인사상 특전)</b> ..... ..... ..... ..... ..... ..... ..... ..... <u>공동 제안자로 부여하</u> <u>되 그 인원은 5명 이하로 한다.</u>
<b>제25조 (관리기간)</b> ① <신설>  ② 시장은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b>제25조 (관리 등)</b>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지적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상표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 ..... ..... ..... .....